

# 「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6월 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6월 12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3년 6월 12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행정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「주민투표법」 개정('22. 4. 26.)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규정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삭제(안 제3조)
- 2) 주민투표의 대상 삭제(안 제4조)
- 3) 「주민투표법」에 전자서명 요청 근거 마련에 따른 전자서명청구제도 추가(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10조제1항)
- 4) 리·반 단위 청구인서명부 작성 추가(안 제8조제2항)
- 5)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(안 제12조 ~ 안 제12조의6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상위법인 「주민투표법」(2022. 4. 26., 일부개정)의 개정에 따라  
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비하려는 것으로,

○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기준을 명확히 하고,

청구인의 전자서명을 도입하였으며,

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세세히 규정함.

○ 검토결과,

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 
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,  
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군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므로,  
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